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한국건설기계안전원으로 개편》
■ 서범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125호)

2025. 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서범수의원 대표발의(제2207125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1
3. 주요내용	2
4. 검토의견	4
가. 건설기계 검사업무 대행기관 및 타워크레인 검사업무 총괄기관으로 한국건설기계안전원 명시 등(안 제14조)	4
나.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의 설립, 사업(안 제31조의2·제31조의3 신설)	11
다. 자금조달 방법 규정 및 보조금 등, 사용료 등의 징수 근거 마련 등 (안 제31조의4부터 제31조의7까지 신설)	15
라. 건설기계안전원에 대한 지도·감독(안 제31조의8)	18
마. 비밀유지의무, 유사명칭사용금지, 「민법」의 준용 (안 제31조의9부터 제31조의11까지 신설)	20
바.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의 사고조사 명시 및 예방적 조사 도입 등 (안 제35조)	23

I. 서범수의원 대표발의(제2207125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서범수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4. 12. 31.

다. 회 부 일 : 2025. 1. 2.

2. 제안이유

최근 건설기계 등록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건설기계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은 건설기계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설기계의 검사 시설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검사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단법인 형태의 공공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등이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검사대행기관 지정공고에 따라 안전검사를 대행하는 기관에 불과하여 건설기계 안전관리 전담조직으로서 안전관리 역할을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승계한 특수법인으로 한국건설기계

안전원을 설립하고, 건설기계의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건설기계 사고 시 조사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하여 건설기계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 검사대행자 및 검사 총괄기관 지정을 명확히 하고, 총괄기관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 및 재정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안 제14조).

- 1) 제31조의2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이 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함.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이 아닌 별도의 지정검사기관을 검사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3) 검사총괄기관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 및 재정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

나. 건설기계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설립하고, 사업 범위, 자금조달, 재정지원, 지도·감독 등을 규정함(안 제6장의2 신설).

- 1) 검사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승계한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설립하고, 설립등기·부설기관(분사무소, 교육원, 연구원 등) 설치 등을 규정함.
- 2)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의 사업 범위, 자금조달, 재정지원, 사용료 징

수, 자료 제공 요청, 지도·감독, 비밀 유지의 의무, 유사 명칭 사용 금지 및 민법의 준용 등을 규정함.

다. 한국건설기계안전원 등을 건설기계 사고조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조사기관은 조사·점검결과 및 사고 예방대책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사고 예방대책을 건설사업자 등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조사기관을 지정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 및 재정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안 제35조).

- 1) 건설기계로 인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건설기계안전원 등을 사고조사기관으로 지정하여 건설현장 등을 조사·점검할 수 있도록 함.
- 2) 사고조사기관이 조사·점검을 완료하였을 때는 그 결과 및 사고의 예방대책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고의 예방대책을 건설사업자 등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의 권고를 따라야 함.
- 3) 사고조사기관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 및 재정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

4. 검토의견

가. 건설기계 검사업무 대행기관 및 타워크레인 검사업무 총괄기관 으로 한국건설기계안전원 명시 등(안 제14조)

현행	개정안
제14조(검사대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건설기계의 검사에 관한 시설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제13조에 따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검사대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에 대한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31조의2에 따른 한국건설기계안전원
	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기술인력 및 검사업무 규정을 갖추어야 한다.	② -----한국건설기계안전원 및 지정검사기관은----- ----- -----.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로 지정 받은 자(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 및 그 소속 기술인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검사를 대행하는 자-----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	④ -----지정검사기관이----- ----- ----- -----

현행	개정안
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u>검사대행자</u> 또는 그 소속 기술인력이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의2. ~ 5. (생략)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u>검사대행자 지정</u>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u>검사대행자</u>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⑥ (생략)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u>검사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의 검사업무를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에서 검사업무 총괄기관(이하 “총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u> ⑧ <u>총괄기관</u>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의 검사업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 ----- ----- ---. 1. ~ 2. (현행과 같음) 3. <u>지정검사기관</u>----- ----- ----- 3의2. ~ 5. (현행과 같음) ⑤ ----- <u>지정검사기관 지정</u>----- -----<u>지정검사기관으로</u>-----. ⑥ (현행과 같음)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u>검사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의 검사업무를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검사업무 총괄기관(이하 “검사총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u> 1. <u>제31조의2에 따른 한국건설기계안전원</u> 2. <u>「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u> ⑧ <u>검사총괄기관</u>----- ----- ----- -----.

현행	개정안
1. ~ 3. (생략) ⑨ 제8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u>총괄기관</u>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u>총괄기관이</u>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하거나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거나 <u>총괄기관 지정</u>을 취소할 수 있다. ⑪ <u>총괄기관</u>은 검사업무의 확인·점검을 위하여 <u>검사대행자</u>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u>검사대행자</u>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⑫ 그 밖에 <u>총괄기관</u>의 지정, 지정취소, 업무수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⑨ ----- <u>검사총괄기관</u>----- ----- -----. ⑩ -----<u>검사총괄기관이</u> ----- ----- ----- -----<u>검사총괄기관 지정</u>----- -----. ⑪ <u>검사총괄기관</u>----- -----<u>지정검사기관</u>----- -----<u>지정</u> <u>검사기관</u>은----- -----. ⑫ 제7항에 따라 <u>검사총괄기관</u>을 지정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범위에서 지도·감독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⑬ -----<u>검사총괄기관</u>----- ----- -----.

개정안은 건설기계 검사업무 대행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타워크레인)의 검사업무 총괄기관에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명시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법 제13조¹⁾는 건설기계²⁾의 소유자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건설기계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 제14조³⁾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검사에 관한 시설 및 기술

1) 제13조(검사 등) ①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그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신규 등록검사:** 건설기계를 신규로 등록할 때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건설공사용 건설기계로서 3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유효기간(이하 “검사유효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에 계속하여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
3. **구조변경검사:** 제17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를 변경하거나 개조한 경우 실시하는 검사
4. **수시검사:** 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안전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검사와 건설기계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실시하는 검사

2)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는 별표 1과 같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건설기계의 범위:** 1. 불도저, 2. 굴착기, 3. 로더, 4. 지게차, 5. 스크레이퍼, 6. 덤프트럭, 7. 기중기, 8. 모터그레이더, 9. 롤러, 10. 노상안정기, 11. 콘크리트벙칭플랜트, 12. 콘크리트피니셔, 13. 콘크리트살포기, 14. 콘크리트믹서트럭, 15. 콘크리트펌프, 16. 아스팔트믹싱플랜트, 17. 아스팔트피니셔, 18. 아스팔트살포기, 19. 골재살포기, 20. 쇠석기, 21. 공기압축기, 22. 천공기, 23. 향타 및 향받기, 24. 자갈채취기, 25. 준설선, 26. 특수건설기계, 27. 타워크레인

3)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검사대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건설기계의 검사에 관한 시설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제13조에 따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의 검사업무를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에서 검사업무 총괄기관(이하 “총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⑧ 총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의 검사업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1. 검사업무의 확인·점검
2. 검사 신청의 접수 및 검사업무의 배정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능력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건설기계(타워크레인)⁴⁾의 검사업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중에서 검사업무 총괄기관을 지정하여 그 검사업무를 확인·점검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른 건설기계 검사업무 수행 체계를 살펴보면, 건설기계 총 27종 중 26종에 대해서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타워크레인의 경우에는 6개 민간기관⁶⁾이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검사업무를 실시하는 외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검사업무 총괄기관

4) 「건설기계법 시행령」

제10조의4(검사업무 등) 법 제14조제7항 및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란 각각 타워크레인을 말한다.

5)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검사체계를 다른 건설기계와 달리 하고 있는 것은, 2017년 경에 발표된 인명피해를 동반한 타워크레인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개선대책으로 타워크레인 검사에 대해서는 총괄기관을 지정하여 검사업무를 확인·점검하도록 하는 등 검사체계를 개편하였기 때문이다.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2017.11.16. 관계부처 합동)”,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5778호, 2018. 9. 18. 일부개정, 시행 2019. 3. 19. 시행) 개정이유” 참고

6)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 지정현황

연번	기관명	주소	지정일자	기관형태
1	대한산업안전협회	서울시 구로구	'08.06.30	사단법인
2	한국산업안전	경북 포항시	'08.06.30	주식회사
3	한국안전기술협회	경기도 안산시	'11.12.15	사단법인
4	케이아이기술	인천광역시 남구	'17.05.23	주식회사
5	(주)에스-솔루션	경기도 하남시	'19.04.04	주식회사
6	(주)코리아종합안전	대전 유성구	'19.05.23	주식회사

※자료: 국토교통부

으로서 민간기관들의 타워크레인 검사업무를 확인·점검하고, 검사 신청 접수 및 배정 등 업무⁷⁾를 수행하고 있음.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건설기계 26종의 검사 대행기관 및 타워크레인 검사의 총괄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았기 때문인데,

개정안은 안 제31조의²⁸⁾에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특수법인인 ‘한국건설기계안전원’으로 개편하여, 건설기계에 대한 검사·안전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안 제14조에서도 안 제31조의²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의 검사 대행기관 및 타워크레인 검사업무 총괄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보임.

7)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검사대행 등) ⑧ 총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의 검사업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1. 검사업무를 확인·점검
2. 검사 신청의 접수 및 검사업무를 배정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8) 개정안

제31조의²(설립 등) ① 건설기계의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건설기계에 대한 검사·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이하 “건설기계안전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건설기계 검사업무 대행기관 및 타워크레인 검사업무 총괄기관 비교】

구분	현행	개정안
검사업무 대행기관	국토교통부장관이 <u>지정</u> 하는 기관 -26종: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지정 -타워크레인: 6개 대행기관 지정	<u>한국건설기계안전원</u>
		국토교통부장관이 <u>지정</u> 하는 기관
타워크레인 검사업무 총괄기관	공공기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u>지정</u> 하는 기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지정	<u>한국건설기계안전원</u>
		공공기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u>지정</u> 하는 기관

나.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의 설립, 사업(안 제31조의2·제31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제6장의2 한국건설기계안전원</u> <u>제31조의2(설립 등) ① 건설기계의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건설기계에 대한 검사·안전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이하 “건설기계안전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u> <u>② 건설기계안전원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u> <u>③ 건설기계안전원은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또는 분사무소, 교육원, 연구원 등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u> <u>제31조의3(사업) 건설기계안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u> <u>1. 건설기계의 형식승인·신고 등의 수탁업무</u> <u>2. 건설기계 검사업무의 대행</u> <u>3. 건설기계 사고조사·현장점검 업무의 대행</u> <u>4. 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u> <u>5. 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교육·홍보</u> <u>6. 건설기계 기술인력의 양성 및 관리</u> <u>7. 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국제 교류 및 협력</u> <u>8. 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통계 작성·관리에 관한 업무</u> <u>9.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대행하거나</u>

현행	개정안
	<u>위탁·승인 받은 업무</u> <u>10. 그 밖에 건설기계안전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건설기계안전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u>

개정안은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특수법인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이하 “건설기계안전원”이라 함)으로 개편·설립하여 건설기계에 대한 검사·안전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⁹⁾¹⁰⁾으로, 건설기계의 검사, 형식승인 및 신고, 타워크레인의 검사대행 총괄관리, 안전점검 및 사고조사 등의 주요 업무를 하고 있고, 정원은 221명이며, 2025년 예산은 약 265억원으로 검사 수수료가 주 수입원임¹¹⁾.

건설공정의 복잡화·대형화와 자동화 공정 도입으로 건설기계 사용이 확대¹²⁾됨에 따라, 건설기계로 인한 위험 발생도 증가¹³⁾하고, 건설현장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1. 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 정원,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2. 기타공공기관: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이외의 기관

10)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2018년 기타공공기관으로, 2019년 2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23년부터는 다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11) 참고: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현황

에서 건설기계 관련 사고와 그로 인한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최근 5년(2020~2024년) 건설기계 사고현황】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사고건수	290건	337건	312건	339건	215건
사망자	36명	46명	46명	31명	29명
부상자	256명	287명	230명	229명	215명

*자료: 국토교통부

그럼에도 현재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형식승인·신고 및 검사, 사고조사 등 건설기계 전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이 없고,

12) 건설기계산업 현황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생산대수	74,556	94,690	103,233	111,634	76,912
국내판매대수	25,582	32,458	31,481	24,188	21,788
수출대수	50,703	70,267	77,302	89,049	56,323
생산액(십억원)	7,671	10,243	11,380	11,543	9,596
내수액(십억원)	2,020	2,539	2,158	1,934	1,815
수출액(백만불)	4,907	6,707	7,170	7,278	5,171
수입액(백만불)	851	1,281	1,367	1,318	1,077
무역수지(백만불)	4,056	5,426	5,803	5,959	4,094

*자료: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한국무역협회

13) 건설기계로 인한 위험발생건수

위험발생객체*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건설기계	1,559건	5,089건	7,227건	7,984건	10,672건

*자료: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위험발생객체: 잠재적으로 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직접적인 위험요소

공공기관으로서 건설기계 검사 및 확인·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타 안전 관련 공공기관과 달리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아, 그 역할을 건설기계 안전관리 전반으로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안전 관련 공공기관 설립 법률 현황(예시)】

기관명	법적 설립근거(조항)
한국교통안전공단	• 한국교통안전공단법(제1조)
국토안전관리원	• 국토안전관리원법(제1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제1조)
한국전기안전공사	• 전기사업법(제74조)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승강기 안전관리법(제55조)
한국가스안전공사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8조)

개정안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건설기계법」에 근거를 둔 특수법인으로 개편하여, 건설기계에 대한 검사·안전관리 업무와 건설기계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건설기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요구되는 최근 상황을 고려하면, 개정안과 같이 관련 공공기관의 전문성 활용 및 역할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건설기계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 자금조달 방법 규정 및 보조금 등, 사용료 등의 징수 근거 마련 등
(안 제31조의4부터 제31조의7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31조의4(자금의 조달 등) 건설기계안전원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제31조의3의 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금 2. 자산 운영 수익금 3.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을 포함한다)의 출연금·보조금·융자금 또는 기부금 4. 그 밖의 수입금
<신설>	제31조의5(보조금 등)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건설기계안전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신설>	제31조의6(사용료 등의 징수) 건설기계안전원은 건설기계안전원이 관리하는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제31조의7(자료 제공의 요청) 건설기계안전원은 제31조의3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건설기계 안전과 관련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 제31조의4부터 제31조의7까지는 건설기계안전원의 재정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에 관한 내용으로,

안 제31조의4에서는 건설기계안전원이 사업 수입금, 자산 운영 수익금, 보조금 등의 재원으로 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도록 하고, 자금조달 방식 중 보조금 등과 그 밖에 수익금에 대하여는 안 제31조의5와 안 제31조의6에서 각각 정부의 출연·보조·융자와 건설기계안전원의 사용료·이용료 징수 근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1조의7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열람·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신설되는 건설기계안전원은 건설기계의 검사 및 형식승인·신고, 사고 조사, 안전교육 등 다양한 공적 업무를 수행할 예정¹⁴⁾으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법인의 설립을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유사 입법례¹⁵⁾와 같이 기관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조달 방법,

14) 개정안

제31조의3(사업) 건설기계안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건설기계의 형식승인·신고 등의 수탁업무
2. 건설기계 검사업무의 대행
3. 건설기계 사고조사·현장점검 업무의 대행
4. 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 개발
5. 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교육·홍보
6. 건설기계 기술인력의 양성 및 관리
7. 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국제 교류 및 협력
8. 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통계 작성·관리에 관한 업무
9.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대행하거나 위탁·승인 받은 업무
10. 그 밖에 건설기계안전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건설기계안전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출연금·보조금 등 지원 및 사용료·이용료 징수 근거 등 재정과 관련된 사항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관계 행정기관이나 기관·단체 등에 대한 자료의 열람·제공 등 협조 요청 또한 건설기계안전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 보임¹⁶⁾.

15)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13조(자금의 조달 등)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또는 보조금
2.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여 생긴 수입금
3. 차입금(외국에서 차입한 자금 및 들어온 물자를 포함한다)
4. 자산 운영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16조의3(보조금 등)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16조의4(사용료 등의 징수) 공단은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국토안전관리원법」

제8조(자금의 조달 등) ① 관리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

1. 정부의 출연금(出捐金) 또는 보조금
 2. 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공제조합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출연금
 4. 제5조에 따른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5. 제12조에 따른 차입금(借入金)
 6. 제13조에 따른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보조금)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수수료 등의 징수) 관리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와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징수할 수 있다

16)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24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공단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교통안전과 관련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국토안전관리원법」

제17조(자료 제공의 요청) ① 관리원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라. 건설기계안전원에 대한 지도·감독(안 제31조의8)

현행	개정안
<신설>	제31조의8(건설기계안전원에 대한 지도·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안전원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1. 제31조의3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3.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4.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안전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및 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건설기계안전원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건설기계안전원은 제3항에 따른 시정을 명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안 제31조의8은 건설기계안전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건설기계안전원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과 업무·회계·재산 관련 사항의 보고 요구 및 소속 공무원을 통한 검사,

시정명령, 건설기계안전원의 시정명령 이행 및 결과보고 등을 규정하고 있음.

신설되는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으로서 건설기계 검사, 검사업무 점검 및 확인, 건설기계에 대한 형식승인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게 되고, 정부로부터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출연·보조도 받을 수 있음.

이에 따라,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업무 수행 및 회계 적절성 여부에 대한 주무부처의 지도·감독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이며, 「한국교통안전공단법」, 「국토안전관리원법」 등에도 유사 입법¹⁷⁾이 있음.

17) 「국토안전관리원법」

제18조(지도·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관리원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원의 장부·서류·시설이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사업이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에 관한 사항
2. 경영지침의 이행에 관한 사항
3. 각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4. 각 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관리원에 그 사실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28조(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1.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3. 제6조의 사업에 따른 출자 및 출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
5.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사업의 수행
6.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한 사업의 수행

마. 비밀유지의무, 유사명칭사용금지, 「민법」의 준용
(안 제31조의9부터 제31조의11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31조의9(비밀 유지의 의무) 건설기계안전원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盜用)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제31조의10(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건설기계안전원이 아닌 자는 한국건설기계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1조의11(「민법」의 준용) 건설기계안전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 제31조의9부터 제31조의11까지는 건설기계안전원의 전·현직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건설기계안전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건설기계안전원에 대하여 「건설기계관리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민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먼저, 비밀 유지 의무와 관련하여, 비밀은 그 개념상 누설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형법」, 「변호사법」 등 여러 법률에서 공무원 또는 자격사들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을 금지¹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공공기관으로서 공적 업무를 수행하게 될 건설기계안전원에 대해서도 그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 또는 도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음, 유사명칭 사용금지는, 건설기계안전원이 아닌 자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의 혼선을 방지하고, 건설기계안전원의 공신력 및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해 보이며,

다음, 「민법」의 준용과 관련해서는, 건설기계안전원은 개정안에 따른 특수법인으로, 현행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기타공공기관¹⁹⁾으로서의

18)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①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변호사법」

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사법」

제23조(비밀엄수) 행정사 또는 행정사이었던 사람(행정사의 사무직원 또는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 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법」

제92조의3(대리상의 영업비밀준수의무) 대리상은 계약의 종료후에도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본인의 영업상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1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1. 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 정원,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2. 기타공공기관: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이외의 기관

지위를 승계²⁰⁾²¹⁾하게 되므로, 「건설기계관리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하고, 그 외에는 일반 규정인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임.

아울러,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한 유사 입법례로 「국토안전관리원법」, 「한국교통안전공단법」 등 다수 법률이 있음²²⁾.

20)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2018년 기타공공기관으로, 2019년 2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23년부터는 다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21) 안 부칙 제2조(한국건설기계안전원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및 제3조(공공기관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승계함.

22) 「국토안전관리원법」

제19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관리원의 임원이나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관리원이 아닌 자는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2조(「민법」의 준용) 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2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30조(비밀누설금지 등) 공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공안전기술원법」

제1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기술원이 아닌 자는 항공안전기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기술원의 임직원 또는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민법」의 준용) 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2조(비밀 유지의 의무) 공단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3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바.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의 사고조사 명시 및 예방적 조사 도입 등
(안 제35조)

현행	개정안
제35조(보고·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건설현장·사무소 또는 건설기계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건설기계,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보고·검사·조사 등) ① ----- ----- ----- ----- ----- ----- ----- -- 검사·조사하게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신설>	7. 전문교육기관
<신설>	8. 검사총괄기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로 인한 중대한 사고(사망 등 사고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제작결함 또는 안전기준 적합 여부의 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소속된 직원으로 하여금 사고 현장에 출입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로 인한 중대한 사고(사망 등 사고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가 발생하였거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고조사기관(이하 “사고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건설공사 현장 등에 대한 조사·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1. 총괄기관	1. 한국건설기계안전원

제64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현행	개정안
2. 한국교통안전공단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제1항에 따라 <u>검사</u> 또는 질문하는 공무원 및 제2항에 따른 <u>사고 현장에 출입하는 직원</u>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소속 직원이 <u>검사·조사</u> 등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2. 한국교통안전공단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u>검사·조사</u>----- -----<u>사고조사</u> <u>기관의 직원</u> ----- ----- -----. ④ 제2항에 따른 사고조사기관이 <u>조사·점검</u>을 완료하였을 때는 그 결과 및 사고의 예방을 위한 대책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사고의 예방을 위한 대책을 건설공사의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⑥ 건설공사의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5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고를 따라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라 사고조사기관을 지정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범위에서 지도·감독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 제35조는 건설기계 관리와 관련한 보고·검사 및 사고조사 체계를 개편·개선하려는 것으로, 조 제목 및 각 항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 표와 같음.

【현행 및 개정안의 주요 내용 비교】

구분	주요 개정사항	현행	개정안
안 조 제목	‘조사’ 명시 (각 항의 내용 반영)	보고·검사 등	보고·검사· <u>조사</u> 등
안 제1항	보고요구 및 출입검사 대상 기관 추가	1. 건설기계의 소유자 2.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의 제작과 등록번호 새김을 하는 자 3. 검사대행자 4.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자 5. 건설기계사업자 - <신 설> - <신 설>	1.~5. (현행과 같음) 6. <u>전문교육기관</u> 7. <u>검사총괄기관</u>
안 제2항	사고조사기관에 한국건설연구원 명시	1. <u>총괄기관</u> *타워크레인 관련 사 고로 한정 2. 한국교통안전공단	1. <u>한국건설기계안전원</u> *전체 건설기계 사고 조사로 확대 2. 한국교통안전공단
	사고 예방을 위한 조사 추가	-건설기계로 인한 중대 한 사고 발생 시 조사 - <신 설>	-건설기계로 인한 중대 한 사고 발생 시 조사 - <u>안전사고 예방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 조사</u>
안 제3항	조문 정비	검사 <u>사고현장 출입</u> 직원	검사· <u>조사</u> <u>사고조사기관</u> 직원

구분	주요 개정사항	현행	개정안
안 제4항	사고조사기관의 국토교통부장관 보고사항에 사고예방대책 추가	사고조사결과 보고	사고조사결과 및 <u>사고예방대책</u> 보고
안 제5항	사고예방대책 권고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인·허가기관, 건설사업자, 관계 행정기관에 사고예방 대책 권고 가능
안 제6항	사고예방 대책 권고 이행	<신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고예방대책 권고 이행
안 제7항	지도·감독 및 경비 지원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필요한 범위에서 사고 조사기관 지도·감독 및 경비 지원 가능

개정안 제35조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조 제목이 현행은 ‘보고·검사 등’으로 되어 있으나, 현행 제2항 및 제4항에서 건설기계 사고의 ‘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1항 및 제3항에서도 ‘조사’라는 용어를 추가하고 있음을 반영하여, 조 제목을 ‘보고·검사·조사 등’으로 변경하고 있음.

다음, 안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고를 요구하거나 출입 검사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에 ①안전교육등을 실시하는

전문교육기관²³⁾과 ②타워크레인 검사업무의 확인·점검 등을 수행하는
검사총괄기관²⁴⁾을 추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있음.

다음, 안 제2항은 현행 건설기계로 인한 중대한 사고를 조사할 수
있는 기관 중 ‘총괄기관’을 ‘한국건설기계안전원’으로 변경하고,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조사를 추가하는 내용임.

현행법 제35조제2항²⁵⁾은 건설기계로 인한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총괄
기관’의 직원이 사고 현장에 출입·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동법
제14조제7항²⁶⁾에 따르면 ‘총괄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23)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 ① 건설기계조종사는 건설기계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하 “안전교육등”이라 한다)을 받
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안
전교육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등의 대상·내용·방법·시기 및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등
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4) 개정안

제14조(검사대행 등)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의 검사업무를 확인
·점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검사업무 총괄기관(이하 “검사총괄기
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제31조의2에 따른 한국건설기계안전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5) 「건설기계관리법」

제35조(보고·검사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로 인한 중대한 사고(사망 등 사고 정도가 심한 것으
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제작결함 또는 안전기준 적합 여부의 조사
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소속된 직원으로 하여금 사고 현장에 출입하게 할
수 있다.

1. 총괄기관

2. 한국교통안전공단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6)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검사대행 등)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의 검사업무를 확
인·점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에서 검사업무 총괄기관(이하

(타워크레인) 검사업무의 확인·점검을 위해 지정된 기관을 의미함.

이에 따라, 타워크레인 검사업무 관련 ‘총괄기관’(현재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지정)의 건설기계 사고조사 범위는 타워크레인 관련 사고로 한정되는 것으로 보이며²⁷⁾,

개정안은 현행 ‘총괄기관’을 ‘한국건설기계안전원’으로 변경하여, 건설기계안전원이 타워크레인을 포함한 다른 건설기계의 사고도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사고조사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사’를 추가하는 것은 안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연계되는 것으로,

사고조사기관이 조사(안 제2항) 후에 사고예방대책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안 제4항)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 등에 사고예방대책을 권고(안 제5항)하며, 발주청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권고를 이행(안 제6항)하도록 함으로써,

“총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4(검사업무 등) 법 제14조제7항 및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란 각각 **타워크레인**을 말한다.

27)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외 다른 건설기계 관련 사고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하는 건설사고 조사를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함.

건설기계 사고조사의 사전적 예방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다음, 안 제3항은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고, 안 제7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사고조사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과 경비 지원을 규정한 것으로, 사고조사기관의 적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 보임.

한편, 현행법 제44조²⁸⁾는 제35조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일부 용어(조사, 점검 등)의 추가·변경이 있으므로,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591

28) 「기계설비관리법」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35조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검사·질문을 거부·방해·기피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35조제2항에 따른 직원의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1. 설립근거 · 목적 및 연혁

가. 설립근거 및 목적

- (설립근거)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재단법인('97.12)
- (목 적) 건설기계 검사와 성능평가 등을 통한 안전기술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정관 제1조)

나. 주요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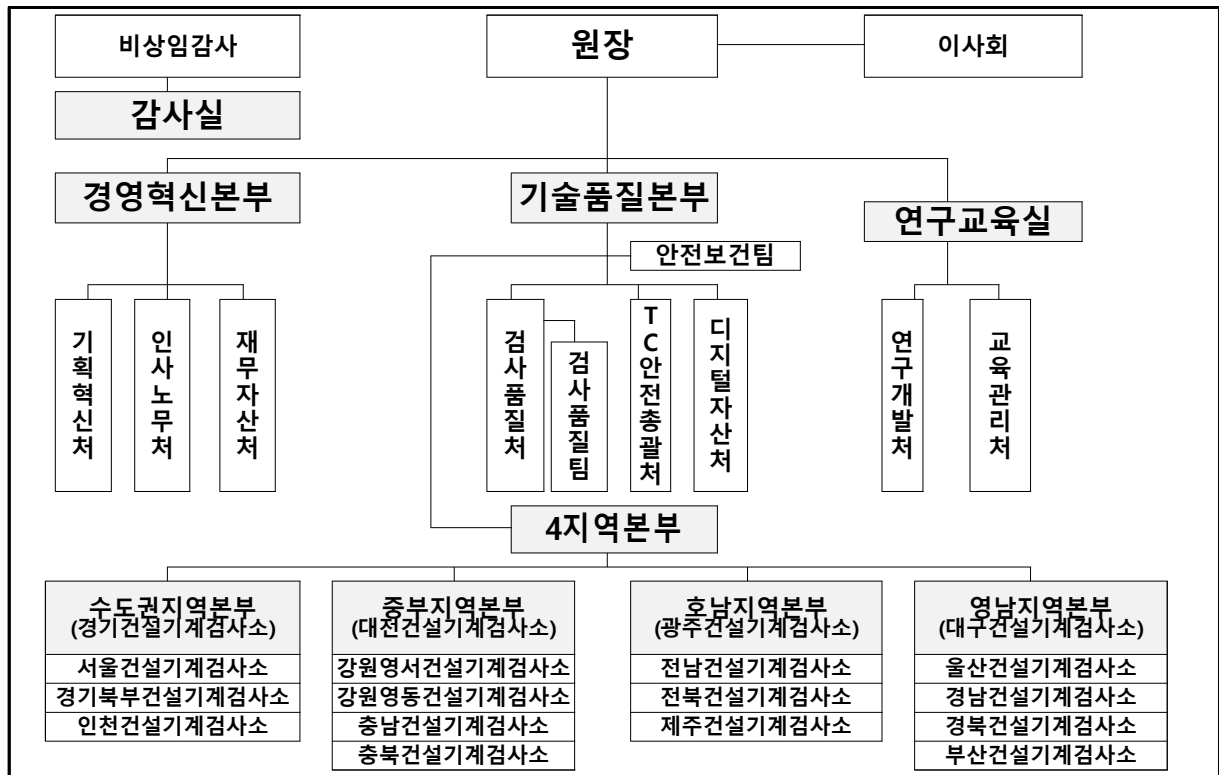
- **1997.12** :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설립(민법 제32조)
- **2018. 2** : 국토교통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지정(기획재정부)
- **2019. 2** : 국토교통부 산하 준정부기관 지정(기획재정부)
- **2019. 8** : 타워크레인 총괄기관 지정(국토교통부)
- **2020. 5** :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기관 지정(국토교통부)
- **2023. 2** : 국토교통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지정(기획재정부)

2. 주요업무 (국토부 법정위탁 및 자체 정관에 의한 사업)

- 건설기계 검사(타워크레인을 제외한 26종)
- 건설기계 형식승인(타워크레인) 및 신고(21종)
-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 총괄관리, 안전점검 및 사고조사
- 건설기계 기술 개발 · 연구 및 자료수집
-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 건설기계 성능 및 안전에 관한표준개발 및 국제협력

3. 조직 및 예산

가. 조 직 : (본원) 2본부·2실, 8처·2팀 / (지역) 18개 지역검사소(41개 출장검사소)



나. 2025년 예산

(단위: 천원)

구 분	'24년 예산(A)	'25년 예산(B)	증 감(B-A)	(B-A)/A
자체 예산(계)	27,822,535	26,450,000	△ 1,372,535	△ 4.9
인건비	12,194,440	12,879,400	684,960	5.6
사업비	9,196,575	8,638,620	△ 557,955	△ 6.1
관리비	3,900,000	3,772,250	△ 127,750	△ 3.3
(목적)예비비	700,000	700,000	0	0.0
(일반)예비비	287,000	-	△ 287,000	순 감
자본투자비	1,544,520	459,730	△ 1,084,790	△ 70.2

* '25년 수입(총 264.5억원) : 사업(231억)/사업 외(3.5억)/전기전입금(30억)